

「2026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사업(방학 집중형)」 모집 공고 관련 Q&A

<한국과학창의재단, 2026. 9. 10.>

〈질의응답 목차〉

- I. 사업 및 공모 관련
- II. 프로그램 확보·고도화 관련
- III. 강사 확보 및 연수 관련
- IV. 학교 프로그램 지원 관련
- V. 사업비 구성 관련 사항

가. 제출 시 유의사항

- 신청서 접수 마감 시간의 기준은 재단 사업관리시스템(PMS) 내 제출 완료 로그기록 시간(18:00) 기준이며, 이후 발급된 접수확인증과 제출된 서류는 정상 접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재단 사업관리시스템 외 접수(현장 방문, 이메일 등) 건은 정상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

※ 마감 시점에는 시스템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최소 1~2일 전 접수 완료 권장,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접수 마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

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에 청서 표기는 모두 예시이므로, 신청기관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나. 공고 문의처

- (사업 문의)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활동지원실
 - ※ (전화) 02-559-3870, 3973, 3979 / (E-Mail) afterschool@kosac.re.kr
- (사업관리시스템(IBMS) 문의) 02-559-3868 / pms@kosac.re.kr

1.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한가요?

- ☞ 신청은 대학·공공·민간기관 단독 명의로만 가능하며,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주관은 불인정
- ☞ 다만 대학·연구기관·문화체육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적극 권장 사항이며, 협력체계 구축 내용 및 관련 증빙 등은 ‘공급체계의 우수성’ 평가 시 고려

2. 공모를 통해 몇 개의 공급기관을 선정하나요?

- ☞ 총 사업비 36억원 내에서 12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, 권역 별로 최소 1개 기관 이상 선정 예정

3. 응모하는 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권역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☞ 기관 소재지와 다른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나, 지역자원 활용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, 신청 권고.

4. 집중 운영지역은 몇 개까지 설정 가능한가요?

- ☞ 권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 단위로 1개 이상이며 상한 없음, 세종은 기초자치단체에 준하여 설정 가능.
- ☞ 다수의 집중 운영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시·군·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 필요(예: 경기 남부(안산시), 경남 서부(산청군) 등)

5. 공급기관 내 사업 전담조직을 신규로 마련해야 하나요?

- ☞ 공급기관 내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운영해도 상관없음. 다만, 관리자 1명, 전담 인력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실무자를 확보하여 배치·운영해야 함

6. 초등교육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들만 지원 가능한가요?

- ☞ 아니요. 본 과제의 지원 자격은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대학, 공공기관, 민간기관임.

7. 운영 실적 증빙시, 재단 양식이 따로 존재하나요?

- ☞ 재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은 없음. 발급기관 혹은 신청기관 양식에 맞추어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
- ☞ 단, 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실적 증빙(선택사항)의 경우 첨부4 양식에 맞추어 작성 필요.

8. 재단의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사업과 중복지원은 안되나요?

- ☞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함.

9.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

- ☞ 수강료(강사료·수용비)를 제외한 교재·교구비 등 프로그램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지원하며, 수강료는 학교가 부담*
- * 학생·학부모 부담금(방과후 바우처 활용 포함), 학교 자체 예산, 교육지원청 지원예산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

10. 지역 내 사전소통 증빙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

- ☞ 네. 신청기관은 지역 내 학교와의 사전소통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 수요를 확인하고,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- ☞ 사전소통 결과는 사업규모와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, 성과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미달성한 분량에 대한 사업비는 잔액으로 반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요를 충분히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

11. 성과목표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본 사업은 성과목표로 사업비 1억원당 최소 30학급(750차시) 이상 학교 매칭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☞ 다만, 학생 수 등도 사업규모와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예상 규모를 설정할 것을 권장

12. 성과목표로 설정한 학급 수만큼 학교와 사전소통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☞ 사전소통이 필요한 학교 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, 성과목표로 설정한 학급 수 만큼 학교와 사전소통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님
- ☞ 다만, 사전소통 결과를 통해 지역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였는지와 사업규모·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므로,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학교와 사전소통을 실시할 것을 권장

1. 프로그램 공급 대상이 누구인가요?

- ☞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임.
- ☞ 다만, 학생 수·시설 여건 등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학급의 50% 이상이 초3 이상인 경우 초1~2 학생도 함께 참여 가능

2. 3학년과 4학년 등으로 학년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나요?

- ☞ 지역 내 수요에 따라 학년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으나, 의무사항은 아님.

3. 프로그램 주제·분야에 지역만의 특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?

- ☞ 지역만의 특색 있는 주제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, 지역의 교육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것을 권장

4. 확보해야 하는 분야별 프로그램 수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분야별 최소 프로그램 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, 운영모델별 최소 1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확보·고도화해야 함

5. 학기 중 프로그램도 개발·운영할 수 있나요?

- ☞ 방학 중 프로그램 공급을 중심으로 하되, 지역 수요에 따라 방학 기간과 연계하여 학기 중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

6.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몇 차시로 구성해야 하나요?

- ☞ 지역 내 수요에 맞추어 자유롭게 차시를 구성할 수 있음.

7. 차시로 인정되는 기준 시간이 있나요?

☞ 1차시는 40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기획·운영 필요

8.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프로그램 편성·조정 등이 가능한가요?

☞ 학교 수요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·운영방식 등을 조정 가능

9. 신규 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나요?

☞ 기존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하나, 본 사업의 운영모델 및 방학 중 운영 여건 등에 맞게 일정 수준 이상 고도화 필요

10.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주제·분야를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나요?

☞ 지역 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주제·분야를 결합하여 구성·운영 가능

11. 프로그램 계획서는 확정안을 제출해야 하나요?

☞ 선정 이후 프로그램 계획서 보완은 가능하나, 선정 후 겨울방학 공급까지 준비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응모 단계에서 실제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할 것을 권장

12. 프로그램 개발·운영 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?

☞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활용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, 필요한 경우 출처 표기 및 이용허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

13. 거점학교형 프로그램의 수강료 수납·지급은 어떻게 하나요?

- ☞ 수강료 수납·지급 절차는 지역 및 학교별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참여 학교 및 교육청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 필요
- ☞ (예시) 참여 학교별로 자교 학생의 수강료를 수납·지급하고 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거나, 학교 간 협약 및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거점학교 중심으로 수납·지급하는 방식 등 검토 가능

1. 외부 소속 강사를 활용해도 되나요?

- ☞ 외부기관 소속 강사 및 개인활동 강사 모두 활용 가능하나, 공급기관이 자체적인 검증·선발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, 초등교육 역량, 학생 관리 역량 등을 확인한 후 선발·활용해야 함

2. 보조강사를 활용할 수 있나요?

- ☞ 네. 학교 요청 또는 공급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보조강사를 활용할 수 있음.

3. 강사료의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강사료는 지역별 강사료 기준 및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산출하고, 실제 운영 시 학교의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
- ☞ 단, 강사료는 본 사업비로 지원하지 않으며, 학교가 부담하는 수강료에서 지급

4. 강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?

- ☞ 소외지역(읍·면, 도서벽지학교,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) 출강 시에 한하여 강사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며, 프로그램 공급비로 집행

5. 강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강사의 별도 자격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, 공급기관이 자체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, 초등교육 역량, 학생 관리 역량 등을 검증한 후 선발·관리해야 함

6. 한 명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?

- ☞ 강사가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

7. 사업 참여인력이 프로그램 강사로도 참여가능한가요?

- ☞ 사업 참여인력이 프로그램 강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, 프로그램 강사료는 본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음

8. 프로그램 강사 명단은 확정안을 제출해야 하나요?

- ☞ 선정 이후 강사 명단 보완은 가능하나, 원활한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응모 단계에서 운영규모에 필요한 강사풀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

9. 강사 연수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해야 하나요?

- ☞ 공급 예정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전형 연수·컨설팅 등을 실시하고, 초등학생 교수법, 학생 지도·관리, 안전관리, 교육의 중립성 등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

10. 강사 연수의 운영 시간 기준은 몇 시간인가요?

- ☞ 별도의 연수시간 기준은 없으며, 강사의 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, 사업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연수·컨설팅을 운영해야 함

11. 강사 풀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한가요?

- ☞ 대학 재학생도 강사로 활용 가능하나, 공급기관이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, 초등교육 역량, 학생 관리 역량 등을 검증한 후에 선발해야 함

12. 매칭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강사로 활용해도 되나요?

- ☞ 매칭된 초등학교 교원의 강사 활용 가능 여부 및 강사료 지급 등은 관련 규정과 해당 학교의 운영기준에 따라 판단 필요

1. 학교에 공급해야 하는 프로그램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?

- ☞ 사업비 1억원당 최소 30학급·750차시 이상을 공급해야 하며, 학급별 운영 차시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

2. 공급기관이 선택한 지역만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하나요?

- ☞ 집중 운영지역을 우선으로 공급하되, 방학 시작 약 1개월 전까지 성과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 가능

3. 학교 모집과 프로그램 매칭의 세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(프로그램 안내·모집) 공문, 늘봄허브, 홍보자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고, 늘봄허브 및 기관 자체채널 등을 활용하여 운영 희망 학교의 신청·접수
- ☞ (프로그램 매칭) 운영모델의 특성, 학교의 교육 수요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 희망 학교와 프로그램을 매칭
- ☞ (공급·관리) 매칭된 학교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, '26년 겨울방학부터 프로그램 공급·관리

4. 프로그램 제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'26년 겨울방학과 '27년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운영하되, 방학 기간과 연계하여 '27년 1학기도 운영 가능('26.12월 ~ '27.8월)

5. 프로그램 운영의 모니터링 기준이 있나요?

- ☞ 운영 목표 학급의 30% 이상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학생·학부모·학교 의견 및 강사 연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운영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

6. 학교가 공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추가로 프로그램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☞ 공급기관의 여력에 따라 추가 운영이 가능함.

7. 학교 공급 시 학급 당 참여 학생 수 기준이 있나요?

☞ 별도의 참여 학생 수 기준은 없으며, 프로그램 특성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운영

8.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급시간은 자율인가요?

☞ 네. 별도로 정해진 프로그램 공급시간은 없음.

9. 기관에서 진행 중인 타 사업의 예산을 사용해도 되나요?

☞ 타 사업 예산의 활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집행기준 및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, 활용 가능한 경우에도 사업별 예산과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

10. 집중 운영지역에 개수 제한이 있나요?

☞ 집중 운영지역은 1개 이상 설정해야 하며, 개수에 별도 상한은 없음

11. 재료비는 학생이 부담하나요?

☞ 재료비·인쇄비 등 수강료(강사료·수용비) 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비로 지원

12. 강사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?

☞ 강사료의 구체적인 수납·지급 방식은 지역 및 학교별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개인위탁 또는 기관위탁 등 해당 학교의 절차에 따라 지급

13. 보조강사 투입시 보조강사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?

- ☞ 주강사와 동일하게 학교가 부담하는 수강료에 포함하여 지급

14. 학교외 청소년시설, 센터 등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?

- ☞ 학교 외 청소년시설·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
- ☞ 다만, 프로그램 신청·매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, 해당 시설·센터가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

15. 하나의 학교에 다수의 학급 운영이 가능한가요?

- ☞ 네. 학교 수요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다수 학급 운영 가능

16.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료를 학교에 교부 후, 학교가 강사료를 집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?

- ☞ 지역별 수강료 지원 및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강사료를 교부하고, 학교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

17. 사업에서 정하는 강사료 기준은 따로 있나요?

- ☞ 본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강사료 기준은 없으며, 지역별 강사료 기준 및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 필요

1.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?

- ☞ 기관 자체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함.
- ☞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수행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책임도 수행기관에 있음
- ☞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등록증, 교육인허가증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함.

2. 강사료 편성은 인건비로 하는건가요?

- ☞ 강사료 편성은 수강료(강사료+수용비)에서 처리해야 함. 프로그램 강사료는 본 사업비의 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, 학교가 부담하는 수강료를 통해 지급

3. 수강료의 수납·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?

- ☞ 수강료의 구체적인 수납·지급 방식은 지역 및 학교별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며, 개인위탁 또는 기관위탁 등 해당 학교의 절차에 따라 처리

4. 자산성 교구재 구매가 가능한가요?

범용 장비나 자산성 교구재는 임차가 원칙이나, 불가피하게 구매를 해야 할 경우 재단 승인 후 구매가 가능함.

- ※ 자산성 교구재란 내용연수 1년 이상이면서 학생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·재사용되는 물품, 또는 부대비용 포함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하며, 단가와 무관하게 범용 정보·사무기기 및 영구 라이선스 SW를 포함함
- ☞ ※ 「물품관리법」 제5조 및 조달청 고시 「물품분류지침」 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내용연수」의 물품별 내용연수표 준용
- ※ 학교로 송달되어 학교 물품으로 관리되는 교구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해당 시·도교육청 물품관리 조례상 비소모품 기준 참고

5. 수강생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비도 수정해야 하나요?

- ☞ 수강생 수 변동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 운영 규모 및 소요비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업비 집행에 반영해야 하며, 주요 사업계획 또는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 또는 승인 필요

6. 재료비 상한선이 있나요?

- ☞ 재료비의 별도 상한은 없으나,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산출 필요
- ☞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선정 평가, 사업비 심의 등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